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12. 30(수) 10:20

제22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가족국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3.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예산(안) 규모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제3회추경(안) (명시이월)
		소 계	당초예산	제1회추경	제2회추경	간주처리	
계	754,298,839	754,298,839	527,951,983	27,063,159	25,365,517	173,918,180	- <51,617,791>
일반회계	739,811,732	739,811,732	515,105,346	26,996,185	23,969,075	173,741,126	- <51,617,791>
특별회계	14,487,107	14,487,107	12,846,637	66,974	1,396,442	177,054	-
의료급여	607,560	607,560	447,842	-	46,566	113,152	-
주민소득	889,881	889,881	461,580	-	428,301	-	-
주차장	12,989,666	12,989,666	11,937,215	66,974	921,575	63,902	-

※ 세출규모 변동은 없음

3. 검토의견

○ 2020년 제3회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의

- ▷ 예산 최종 규모는 7,542억 9,883만 9천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당초예산 5,279억 5,198만원과 제1회 추경 270억 6,315만원, 제2회 추경 253억 6,551만원, 간주처리 1,739억 1,818만원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기정액에 대비하여 변동이 없으며

- ▷ 금회 제출된 구 전체 명시이월액은 총 64건 516억 1,779만 1천원이며 복지건설위 소관 명시이월액은 총 34건 440억 7,869만원임.

(복지가족국 11건 9,106,934천원 도시안전국 8건 15,043,809천원

교통건설국 2건 1,505,858천원, 경제환경국 13건 18,422,089천원)

○ 2020년도 복지가족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2020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계	교부세(금)	국시비 보조금	구비
합계 : 3개 부서 / 11건		16,182,143	9,106,934	26,400	4,128,471	4,952,063
어르신장애인과 (3건/418,201천원)	코로나19 대응 복지시설 방역키트 지원	12,000	12,000	12,000	0	
	독산1동분소 보건지소· 데이케어센터 설치(병설형)	300,000	300,000	0	300,000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	2,179,847	106,201	0	0	106,201
여성가족과 (6건/3,888,007천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어린이집 방역 지원(방역키트)	223,846	14,400	14,400	0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500,000	456,447	0	456,447	
	구립별하어린이집 신축	3,060,000	3,054,024	0	3,054,024	
	지혜어린이집 국공립전환	188,000	188,000	0	188,000	
	독산롯데캐슬 국공립전환	130,000	130,000	0	130,000	
	금천구 가족센터 건립	4,542,450	45,136	0	0	45,136
아동청년과 (2건/4,800,726천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4,048,000	4,040,326	0	0	4,040,326

부서명	세부사업명	2020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계	교부세(금)	국시비 보조금	구비
	청년활동전용공간 「금천청년꿈터」 조성	998,000	760,400	0	0	760,400

- 총 3개 부서 11건, 91억 693만 4천원이며,

- **어르신장애인과는**

- 독산1동분소 보건지소 데이케어센터 설치 등 3건 4억 1,820만 1천원이 명시이월되며 연도 내 공사비 지출 불가, 12월 교부금 교부 등으로 연도 내 집행 불가하여 이월하며

- **여성가족과는**

-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등 6건 38억 8,800만 7천원이 명시이월되며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공사 계획 변경 등으로 연도내 지출불가하여 이월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사업은 12월 서울시의 심의 승인으로 21년도 사업 추진으로 이월하며 구립별하어린이집 신축은 대체부지 소유주와의 협의지연에 따라 연도 내 집행 불가하여 이월

- **아동청년과는**

-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등 2건 총 48억 72만 6천원이 명시이월되며 부지 매입 지연 및 공사 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이월하고자 함

- 복지가족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따라 연도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390호, 2020. 6. 9., 일부개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전문개정 2011.8.4.]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